

日本の 주요 석유관련법 개요

1. 석유사업법

【공포】: 1962년 5월11일

【시행】: 1962년 7월10일

【목적】

석유정제업 등의 사업활동을 조정함으로써 석유의 안정적이며 저렴한 공급의 확보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할 것(제 1 조)

【석유공급 계획의 책정】

- 通産 장관은 매년도, 당해년도 이후 5년간의 공급계획을 정하여야 한다. 석유공급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제3조, 제3조의 2)
 1. 원유생산량 및 수입량
 2. 석유제품 생산량 및 수입량
 3. 특정설비의 처리능력
 4. 기타 석유공급에 관한 중요사항
- 告示 : 통산장관은 석유공급 계획을 정하거나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제3조의 5)

【석유정제업의 허가】

-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산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4조)
- 허가의 기준 : 다음 각호에 적합치 않으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6조).
 1. 특정설비의 처리능력이 석유공급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과다하지 않을 것.
 2. 사업을 적절히 수행할 만한 재정적 기반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 3. 사업계획의 내용이 석유의 안정적이며 저렴한 공급을 확보하기에 적합할 것.

【설비 신설 등의 허가】

- 석유정제업자는 특정설비를 신설, 증설 또는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통산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통산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조)

【석유제품 생산계획의 신고】

- 석유정제업자는 매년도, 석유제품 생산계획을 작성, 통산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한 때에도 또한 같다(제10조).
- 변경권고 : 통산장관은 석유공급 계획의 실시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생산계획을 변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제10조의2)

【석유수입업의 신고 등】

- 석유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산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12조).
- 석유수입업자는 매년도 석유수입 계획을 작성, 통산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한 때에도 또한 같다(제12조의2)
- 변경권고 : 석유수입 계획에 대해서도 변경토록 권고할 수 있다.

【석유제품 판매업의 신고】

- 석유제품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산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13조).

【판매가격의 표준액 설정】

- 통산장관은 석유제품 가격이 부당하게 급등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을 경우 석유의 안정적이며, 저렴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표준액을 정할 수 있다(제15조).
- 고시 : 통산장관은 표준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제15조의 2).

【석유심의회에 대한 자문】

- 통산장관은 석유공급 계획의 책정, 인허가 처분, 생산 계획 및 수입계획의 변경권고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석유심의회에 자문을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제20조의 2)

【보고징수】

- 통산장관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2. 휘발유 판매업법

【공포】 : 1976년 11월 25일

【시행】 : 1977년 5월 23일

【주요개정】 : 1981년 6월 12일('81. 12. 11. 시행)
1983년 12월 2일('84. 7. 1. 시행)

【목적】

휘발유 판매업에 대하여 등록, 기타의 규제에 의해 휘발유 판매업의 건전한 발전 및 휘발유 품질의 확보를 도모하고 아울러 휘발유 소비절약에 기여함으로써 휘발유의 안정적 공급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제1조)

【등록】

- (1) 휘발유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산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제3조)

가. 둘 이상의 통산국 관할구역 내에서 휘발유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 통산장관에게 등록할 것.

나. 하나의 통산국 관할구역 내에서 휘발유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 당해 관할 통산국장에게 등록할 것(규칙 3조)

- (2) 등록신청 : 법4조, 규칙3조의 신청서를 제출할 것.
- (3) 등록통보 : 통산장관(또는 통산국장)은 휘발유 판매업자 등록부에 등록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4) 등록거부(법6조)

가. 이 법률에 의한 형을 받았거나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법 제6조 1항의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통산장관(또는 통산국장)은 등록을 거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 지정지구 내의 주유소에 관한 신청서에 대해서는, 당해 주유소의 사업개시에 의해, 지정지구내에서 상당 부분의 휘발유 판매업자가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게 될 것으로 통산장관(또는 통산국장)이 인정할 때, 신청자에 대하여 사업개시일을 뒤로 늦추고, 설비의 축소를 지시할 수 있다.(지시는 신청 수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함) →

→ 지시에 대한 이의 신청 →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 지시,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등록거부

- (5) 상속, 합병에 의한 승계의 신고,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폐지신고에 의한 등록에 失効(제7-10조).
- (6) 통산장관에 의한 등록취소, 사업정지명령(법11조).

【粗惡한 휘발유 판매금지】

휘발유 판매업자는 다음에 제기하는 규격이외의 품질을 연료용 휘발유로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법13조 규칙10조).

- (1) 등유의 혼합률이 4vol.%이하일 것.
- (2) 메틸 알코올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
- (3) 洗淨實在 검이 100ml당 5mg이하일 것.

【품질관리자의 선임과 휘발유의 분석】

휘발유 판매업자는 주유소마다 품질관리자를 선임, 10일 간격으로 휘발유 분석등의 직무를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법 14-16조 규칙11-15조). 또한, 분석은 지정 분석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법 16조의 2, 17조의 2-1 2).

【휘발유 사용절감을 위한 영업제한】

통산장관은 휘발유의 사용절감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휘발유 판매업자의 영업일 제한 또는 영업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을 정해 공포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권고 또는 지시가 가능하다(법 18조). →1982. 7. 1 통산성 고시 252호에 의해, 원칙적으로 일요일의 휘발유판매를 금지 → 1985. 8. 16 통산성 고시 336호에 의거 상기 고시 252호를 폐지

【판매가격에 관한 권고】

통산장관은 휘발유 판매업자가 표준적 판매가격과 현저히 다른 가격으로 휘발유를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지정지구 내의 상당부분의 주유소가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가 있거나 휘발유 안정공급 확보를 위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당해 휘발유 판매업자에 대하여 사태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특정 휘발유 도매업자(휘발유 판매업자에게 월간 100kl 이상의 휘발유를 판매하는자)의 도매가격으로 인해 같은 형태의 사태가 발생하거나 또한 휘발유 판매업자에 대한 권고만으로도 사태개선이 곤란할 때에는 당해 특정 휘발유 도매업자에 대해서도 같은 권고가 가능하다.

정당한 이유없이 권고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포할 수 있다(법 19조).

【장부비치 의무】

휘발유 판매업자는 장부를 비치, 휘발유의 분석기록, 구입선 등을 기재하고, 이를 보존하지 않으면 안된다(법 19조의 2, 규칙 18조).

【통산장관(또는 통산국장)에 의한 보고징수 입회

검사】

통산장관(또는 통산국장)은 휘발유 판매업자 등에 대해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그 사무실, 주유소 등에 입회검사 할 수 있다(법 20조, 규칙 19-21 조).

【벌칙】

각 위반 조문에 따라 30만円 이하의 벌금, 10만円 이하의 벌금, 3만円 이하의 과태료가 정해져 있다(법 24-27조).

3. 특정석유제품 수입 잠정조치법

【공포】: 1985년12월20일

【시행】: 1986년 1월 6일

【취지】

최근 석유제품 무역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현저한 변화 등에 대응하고, 특정 석유제품의 수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특정 석유제품의 수입사업에 관해 필요한 잠정조치를 정한다(제1조). (本 法은 石油業法の 特例法)

【정의】

특정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 등유, 및 경유를 말한다.

- 휘발유 : 원유를 정제하여 얻어지는 경질유분 중, 내연기관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탄화수소유.
 1. 휘발유 완제품
 2. 휘발유 제조용 基材로서 수입되는 리포메이트
 3. 휘발유 제조용 基材로서 수입되는 FCC 가솔린
 4. 상기의 것을 기초성분으로 구성되는 연료 기타 상기와 준하 것.
- 등유 : 원유를 정제하여 얻어지는 中質유분 중, 보다 경질인 성분으로서 등화용 등 난방용, 주방용연료로 사용되는 탄화수소유
- 경유 : 원유를 정제하여 얻어지는 中質유분 중, 등유보다 中質인 성분으로서, 디젤기관의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탄화수소유

【등록】

특정 석유제품의 수입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종류별로, 통산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으면 안된다(제3조).

【등록의 기준】

다음의 각호에 해당될 것(제5조)

1. 특정 석유제품의 수입량이 변동될 경우, 기타 석유제품의 생산량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당해 특정 석유제품의 생산량을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갖추 것(수율조정, 대체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자).
2. 특정 석유제품 또는 원유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저장능력, 재고완충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3. 수입제품의 품질을 조정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품질 조정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품질에 관한 신고】

통산장관은 특정 석유제품 수입업자가 수입한 특정 석유제품의 품질이 그 사용자의 수요에 적합하지 않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특정 석유제품 수입업자에 대해, 품질 확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제9조). (석유제품 생산계획 및 수입계획의 변경권고는 석유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특정석유제품 수입업자의 노력】

특정 석유제품 수입업자는 국제 석유제품 시장동향에 따라, 특정 석유제품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제10조).

【보고징수 및 입회검사】

특정 석유제품 수입업자는 매월 20일까지 전월의 특정 석유제품 수입물량, 원산지를 그 종류별로 통산장관에게 보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시행규칙 제8조).

【벌 칙】

각 위반 조문에 따라 50만㎡ 이하의 벌금 10만㎡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제13-15조).

【폐 지】

'96년 3월 31일까지 폐지하는 것으로 한다(부칙 제2항).

【수출 주의사항】

(’89년 12월 27일, 수출주의사항 元 제36호)

수출의 승인:다음의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1) 국내 석유수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 명확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국내공급이 제약될 우려가 없을 것.
- (2) 가격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고 적절한 수준일 것.
- (3) 거래 상대국(최종 목적지 포함)의 에너지 정책, 국제 에너지 무역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 에너지 무역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을 것.

4. 석유비축법

【공포】: 1975년 12월 27일

(개정 ’81년 5월 2일, 석유가스를 추가)

【시행】: 1976년 4월 26일 (석유가스: ’81년 7월 1일)

【대상유종】

원유, 휘발유(나프타 포함), 제트유, 등유, 경유, 중유, 석유가스

【비축의무자】

- (가) 석유정제업자 : 전년도 석유제품 생산량이 10만kl 이상인 자
- (나) 석유판매업자 : 석유정제업자로부터 그 제조한 석유제품을 계속적으로 구입하거나 또는 전년의 석유 수입물량이 250만kl 이상인 자.
- (다) 석유수입업자 : 전년의 석유 수입물량이 1만kl 이상인 자. 본드용 및 운할유 제조를 위한 원료용 수입은 제외
- (라) 석유가스 수입업자 : 전년의 석유가스 수입물량이 5천톤 이상인 자.

【석유비축 목표의 고시】

통산장관은 매년도 4월30일까지 석유심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여, 차년도 이후의 4년간에 대하여 아래 사항에 관한 비축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1. 비축물량(석유 및 석유가스)
2. 세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저장시설(석유 및 석유가스)

【비축에 관한 계획의 신고】

- 비축의무자는 석유비축 목표 고시 후 1개월 이내에 비축물량, 저장시설에 관한 비축 계획을 통산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통산장관은 비축 의무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생산, 판매, 수입물량의 신고】

비축의무자는, 기준 비축물량의 산정을 위해, 매년 2월 15일까지 석유제품의 생산량, 석유판매량, 수입량 또는 석유가스 수입량을 통산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 석유제품 생산량 : 석유화학 원료용 나프타(2/5), 자가연료, 수출분, 운할유용 원료등은 제외
- 석유판매량 : 석유정제업자,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한 물량, 국산원료로부터의 판매량, 수출량, 운할유 원료, 석유화학 원료용 나프타(2/5) 등은 제외.
- 원유판매량 : 석유정제업자,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판매량, 운할유 원료용 판매량, 석유화학원료용 나프타 판매량(2/5) 등은 제외
- 석유제품 수입량 : 본드용 수입량, 석유화학 원료용 나프타 수입량(2/5)은 제외
- 석유가스 수입량 : 전년도 積増分은 제외

【기준정축량】

통산장관은 비축의무자에 대해 매년 3월 15일까지 常時 보유하여야 할 기준 비축량을 통보한다. 기준비축량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 (1) 산정방식('90년, 석유 82일, 석유가스 50일의 경우)

	석유제품 생산량	석유 판매량	원유판매량	석유제품, 가스수입량
석유정제업자	67일	15일	82일×95/100	55일
석유판매업자		15일	82일×95/100	55일
석유수입업자			82일×95/100	55일(주), 70일
석유가스수입 업 자				50일

〈주〉 석유정제업자,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2) 비축에 산정되는 석유제품의 보관장소

- 소방법에 규정하는 정유공장, 저유소, 취급소, 탱크, 본국 内の 선박, 화차, 석유 파이프라인
- (3) 원유와 석유제품 환산 : 원유 1kl=석유제품 0.95kl

【기준 비축량의 변경】

- (1) 재해,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기준비축량의 보유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통산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준 비축량을 감축할 수 있다.
- (2) 비축의무자는 다른 비축의무자가 기준비축량을 증가시킬 경우 통산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에 상당하는 자기의 기준 비축량을 감축할 수 있다.

【공동비축】

밀접한 거래관계에 있는 복수의 비축의무자는 통산장관의 확인을 받아 공동비축을 할 수 있다.

【권고, 명령, 벌칙 규정】

- (1) 통산장관은 비축의무자가 기준 비축량에 미달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해 석유 또는 석유가스를 보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2) 아래의 어느 한 경우라도 비축의무자에게 석유 또는 석유가스를 보유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가) 석유의 경우는 평균 보유량이 기준 비축량을 연속하여 7회(매 15일, 약 3개월), 석유가스의 경우는 평균보유량이 기준 비축량을 연속하여 18회(매 5일, 약 3개월) 하회한 경우……기간
 - (나) 석유 및 석유가스 보유량이 기준 비축량을 상당정도 하회한 경우……정도
- (3) 위의 명령을 위반한 법인의 대표자, 법인, 종업원은 50만円 이하의 벌금

【장부의 기재】

- (가) 석유 : 15일, 월말의 2회
- (나) 석유가스 :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월말의 6회 ♣ 〈석유정보다이제스트〉